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hillstate.co.kr/s/#goduk-skycity>)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goduk-skycity>)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588-0475)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7.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사전예약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내방시 1인 방문이 원칙이나 사전예약 신청시 동반 신청자에 한해 동행 입장 가능합니다.(최대 2인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병행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588-0475)를 실시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을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견본주택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견본주택 사전 관람		자격검증 및 사전서류접수(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예약 신청 기간	관람 가능 기간	예약 신청 기간	제출 가능 기간
일정	2020.08.24.(월) ~ 2020.09.08.(화)	2020.08.28.(금) ~ 2020.09.08.(화)	2020.09.16.(수) ~ 2020.09.22.(화)	2020.09.17.(목) ~ 2020.09.22.(화)

※ 예약신청 과밀에 따라 예약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신청 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예약신청은 홈페이지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편의 및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견본주택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는 비대면으로 우편을 통한 접수 예정입니다.

- 당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일 : 2020.04.17.)
  - 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9.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 2020.06.1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 전체(일부 제외)로 확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경기 전역(일부 제외), 인천 전역(강화, 옹진 제외),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일부 제외)]
    - 2.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경기(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연수, 남동, 서구),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구(수성구), 대전(동, 중, 서, 유성)]
    - 3.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0년간 해당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2019.08.19.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2020.02.19.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 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시간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goduk-skycity>)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구(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시행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02.09.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동법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www.hillstate.co.kr/s/#goduk-skycity>)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사전방문예약 신청 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2019. 11. 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1순위 청약일	2순위 청약일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일정
일 정	9월 7일(월)	9월 8일(화)	9월 9일(수)	9월 16일(수)	9월 17일(목) ~ 9월 22일(화)	10월 6일(화) ~ 10월 9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6:00)	견본주택 (10:00~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 해당)</li>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앱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택과 - 제35068호(2020.08.18)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49층 3개동 총665세대  
 [특별공급 211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4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5세대,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1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세대별 대지지분 (m <sup>2</sup>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20001001-01	076.3622	76	76.3622	29.0023	105.3645	42.5171	147.8816	28.9597	172	21	5	45	3	98	4	2024년 05월 예정
	2020001001-02	084.1820	84	84.1820	31.7446	115.9266	46.8711	162.7977	31.9253	256	21	28	40	8	159	6	
	2020001001-03	090.3115	90	90.3115	33.5512	123.8627	50.2839	174.1466	34.2499	228	-	30	-	8	190	3	
	2020001001-04	094.3632A	94A	94.3632	35.5582	129.9214	52.5483	182.4697	35.7865	1	-	-	-	-	1	-	
	2020001001-05	094.4600B	94B	94.4600	36.3824	130.8424	52.6021	183.4445	35.8232	1	-	-	-	-	1	-	
	2020001001-06	101.5619	101	101.5619	39.4293	140.9912	56.5570	197.5482	38.5165	2	-	1	-	-	1	-	
	2020001001-07	106.9274	106	106.9274	41.1451	148.0725	59.5453	207.6178	40.5513	5	-	1	-	-	4	-	
	합 계									665	42	65	85	19	454	13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25]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sup>2</sup>,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0%)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30%)					
									계약시	2021.01.25	2021.07.23	2022.01.25	2022.08.25	2023.02.24	2023.08.25	입주지정일					
076.3622	86	101동 3호 103동3호	4층	1	169,367,950	221,782,050	-	391,150,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39,115,000	117,345,000				
			5층	2	175,144,170	229,345,830	-	404,490,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40,449,000	121,347,000			
			6층	2	180,916,060	236,903,940	-	417,820,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41,782,000	125,346,000			
			7~10층	8	186,692,280	244,467,720	-	431,160,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43,116,000	129,348,000			
			11~15층	10	190,541,650	249,508,350	-	440,050,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44,005,000	132,015,000			
			16~20층	10	192,464,170	252,025,830	-	444,490,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44,449,000	133,347,000			
			21~24층	8	194,391,020	254,548,980	-	448,940,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134,682,000			
			26~29층	8	198,240,390	259,589,610	-	457,830,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45,783,000	137,349,000			
			30~34층	10	200,162,910	262,107,090	-	462,270,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46,227,000	138,681,000			
			35~39층	10	202,089,760	264,630,240	-	466,720,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46,672,000	140,016,000			
			40~44층	10	204,012,280	267,147,720	-	471,160,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47,116,000	141,348,000			
	45~48층	7	205,939,130	269,670,870	-	475,610,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47,561,000	142,683,000					
	86	101동 4호 103동2호	4층	1	171,065,310	224,004,690	-	395,070,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39,507,000	118,521,000			
			5층	2	176,893,490	231,636,510	-	408,530,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40,853,000	122,559,000			
			6층	2	182,726,000	239,274,000	-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7~10층	8	188,558,510	246,911,490	-	435,470,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43,547,000	130,641,000			
			11~15층	10	192,446,850	252,003,150	-	444,450,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44,445,000	133,335,000			
			16~20층	10	194,391,020	254,548,980	-	448,940,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44,894,000	134,682,000			
			21~24층	8	196,335,190	257,094,810	-	453,430,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45,343,000	136,029,000			
			26~29층	8	200,223,530	262,186,470	-	462,410,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46,241,000	138,723,000			
			30~34층	10	202,167,700	264,732,300	-	466,90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46,690,000	140,070,000			
			35~39층	10	204,111,870	267,278,130	-	471,390,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47,139,000	141,417,000			
			40~44층	10	206,056,040	269,823,960	-	475,880,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47,588,000	142,764,000			
			45~48층	7	208,000,210	272,369,790	-	480,370,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48,037,000	144,111,000			
			084.1820	128	101동 1,2호 103동1호	4층	1	185,847,480	242,372,520	-	428,220,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42,822,000	128,466,000	
						5층	3	192,183,880	250,636,120	-	442,820,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44,282,000	132,846,000
						6층	3	198,520,280	258,899,720	-	457,420,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45,742,000	137,226,000
						7~10층	12	204,856,680	267,163,320	-	472,020,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47,202,000	141,606,000
11~15층						15	209,079,500	272,670,500	-	481,750,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144,525,000	
16~20층	15	211,193,080				275,426,920	-	486,620,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48,662,000	145,986,000			
21~24층	12	213,306,660				278,183,340	-	491,490,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147,447,000			
26~29층	12	217,529,480				283,690,520	-	501,220,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50,122,000	150,366,000			
30~34층	15	219,638,720				286,441,280	-	506,080,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50,608,000	151,824,000			
35~39층	15	221,752,300				289,197,700	-	510,950,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51,095,000	153,285,000			
40~44층	15	223,865,880				291,954,120	-	515,820,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51,582,000	154,746,000			
45~48층	10	225,975,120				294,704,880	-	520,680,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52,068,000	156,204,000			
42	101동 5호	5층		1	194,106,500	253,143,500	-	447,250,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44,725,000	134,175,000				
		6층		1	200,508,000	261,492,000	-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7~10층	4	206,905,160	269,834,840	-	476,740,000	47,674,000	47,674,000	47,674,000	47,674,000	47,674,000	47,674,000	47,674,000	143,022,000		
			11~15층	5	211,171,380	275,398,620	-	486,570,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145,971,000		
			16~20층	5	213,306,660	278,183,340	-	491,490,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49,149,000	147,447,000		
			21~24층	4	215,437,600	280,962,400	-	496,40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49,640,000	148,920,000		
			26~29층	4	219,703,820	286,526,180	-	506,230,000	50,623,000	50,623,000	50,623,000	50,623,000	50,623,000	50,623,000	50,623,000	151,869,000		
			30~34층	5	221,839,100	289,310,900	-	511,150,000	51,115,000	51,115,000	51,115,000	51,115,000	51,115,000	51,115,000	51,115,000	153,345,000		
			35~39층	5	223,970,040	292,089,960	-	516,060,000	51,606,000	51,606,000	51,606,000	51,606,000	51,606,000	51,606,000	51,606,000	154,818,000		
			40~44층	5	226,105,320	294,874,680	-	520,980,000	52,098,000	52,098,000	52,098,000	52,098,000	52,098,000	52,098,000	52,098,000	156,294,000		
			45~47층	3	228,236,260	297,653,740	-	525,890,000	52,589,000	52,589,000	52,589,000	52,589,000	52,589,000	52,589,000	52,589,000	157,767,000		
43	103동 4호		4층	1	183,989,960	239,950,040	-	423,940,000	42,394,000	42,394,000	42,394,000	42,394,000	42,394,000	42,394,000	42,394,000	127,182,000		
			5층	1	190,265,600	248,134,400	-	438,40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131,520,000		
			6층	1	196,536,900	256,313,100	-	452,850,000	45,285,000	45,285,000	45,285,000	45,285,000	45,285,000	45,285,000	45,285,000	135,855,000		
			7~10층	4	202,808,200	264,491,800	-	467,30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46,730,000	140,190,000	
			11~15층	5	206,991,960	269,948,040	-	476,940,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47,694,000	143,082,000	
			16~20층	5	209,079,500	272,670,500	-	481,750,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48,175,000	144,525,000	
			21~24층	4	211,171,380	275,398,620	-	486,570,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48,657,000	145,971,000	
			26~29층	4	215,355,140	280,854,860	-	496,210,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49,621,000	148,863,000	
			30~34층	5	217,442,680	283,577,320	-	501,020,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50,102,000	150,306,000	
			35~39층	5	219,534,560	286,305,440	-	505,840,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50,584,000	151,752,000	
			40~44층	5	221,626,440	289,033,560	-	510,660,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51,066,000	153,198,000	
	45~47층	3	223,718,320	291,761,680	-	515,480,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51,548,000	154,644,000			
43	103동 5호		4층	1	182,132,440	237,527,560	-	419,660,000	41,966,000	41,966,000	41,966,000	41,966,000	41,966,000	41,966,000	41,966,000	125,898,000		
			5층	1	188,342,980	245,627,020	-	433,970,000	43,397,000	43,397,000	43,397,000	43,397,000	43,397,000	43,397,000	43,397,000	130,191,000		
			6층	1	194,549,180	253,720,820	-	448,270,000	44,827,000	44,827,000	44,827,000	44,827,000	44,827,000	44,827,000	44,827,000	134,481,000		
			7~10층	4	200,759,720	261,820,280	-	462,580,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46,258,000	138,774,000	
			11~15층	5	204,900,080	267,219,920	-	472,120,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47,212,000	141,636,000	
			16~20층	5	206,970,260	269,919,740	-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21~24층	4	209,040,440	272,619,560	-	481,660,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48,166,000	144,498,000	
			26~29층	4	213,176,460	278,013,540	-	491,190,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49,119,000	147,357,000	
			30~34층	5	215,246,640	280,713,360	-	495,960,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49,596,000	148,788,000	
			35~39층	5	217,316,820	283,413,180	-	500,730,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50,073,000	150,219,000	
			40~44층	5	219,387,000	286,113,000	-	505,50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151,650,000	
	45~47층	3	221,457,180	288,812,820	-	510,270,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51,027,000	153,081,000			
090.3115	45	102동 1호		4층	1	184,962,501	235,406,818	23,540,681	443,910,000	44,391,000	44,391,000	44,391,000	44,391,000	44,391,000	44,391,000	44,391,000	133,173,000	
				5층	1	191,266,667	243,430,303	24,343,030	459,040,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45,904,000	137,712,000
				6층	1	197,570,835	251,453,787	25,145,378	474,170,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47,417,000	142,251,000
				7~10층	4	203,879,168	259,482,575	25,948,257	489,310,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48,931,000	146,793,000
				11~15층	5	208,079,167	264,828,030	26,482,803	499,390,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49,939,000	149,817,000
				16~20층	5	210,183,334	267,506,060	26,750,606	504,440,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50,444,000	151,332,000
				21~24층	4	212,283,335	270,178,787	27,017,878	509,480,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50,948,000	152,844,000
				26~29층	4	216,487,501	275,529,545	27,552,954	519,570,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51,957,000	155,871,000
				30~34층	5	218,591,668	278,207,575	27,820,757	524,620,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52,462,000	157,386,000

		35~39층	5	220,691,667	280,880,303	28,088,030	529,660,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52,966,000	158,898,000		
		40~44층	5	222,795,834	283,558,333	28,355,833	534,710,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53,471,000	160,413,000	
		45~49층	5	224,895,834	286,231,060	28,623,106	539,750,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53,975,000	161,925,000	
46	102동 2호	3층	1	180,479,168	229,700,757	22,970,075	433,150,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43,315,000	129,945,000	
		4층	1	186,850,001	237,809,090	23,780,909	448,440,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44,844,000	134,532,000	
		5층	1	193,216,667	245,912,121	24,591,212	463,720,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46,372,000	139,116,000	
		6층	1	199,587,501	254,020,454	25,402,045	479,010,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47,901,000	143,703,000
		7~10층	4	205,958,335	262,128,787	26,212,878	494,30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148,290,000
		11~15층	5	210,204,168	267,532,575	26,753,257	504,490,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50,449,000	151,347,000
		16~20층	5	212,329,167	270,237,121	27,023,712	509,590,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152,877,000
		21~24층	4	214,450,001	272,936,363	27,293,636	514,680,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154,404,000
		26~29층	4	218,695,834	278,340,151	27,834,015	524,870,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52,487,000	157,461,000
		30~34층	5	220,820,835	281,044,696	28,104,469	529,970,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52,997,000	158,991,000
		35~39층	5	222,945,834	283,749,242	28,374,924	535,070,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53,507,000	160,521,000
		40~44층	5	225,066,668	286,448,484	28,644,848	540,160,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54,016,000	162,048,000
		45~49층	5	227,191,667	289,153,030	28,915,303	545,260,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54,526,000	163,578,000
46	102동 3호	3층	1	182,300,001	232,018,181	23,201,818	437,520,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43,752,000	131,256,000	
		4층	1	188,733,334	240,206,060	24,020,606	452,960,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45,296,000	135,888,000
		5층	1	195,170,834	248,399,242	24,839,924	468,410,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140,523,000
		6층	1	201,604,167	256,587,121	25,658,712	483,850,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48,385,000	145,155,000
		7~10층	4	208,037,500	264,775,000	26,477,500	499,290,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49,929,000	149,787,000
		11~15층	5	212,329,167	270,237,121	27,023,712	509,590,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50,959,000	152,877,000
		16~20층	5	214,470,835	272,962,878	27,296,287	514,730,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51,473,000	154,419,000
		21~24층	4	216,616,668	275,693,939	27,569,393	519,880,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155,964,000
		26~29층	4	220,908,334	281,156,060	28,115,606	530,180,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53,018,000	159,054,000
		30~34층	5	223,050,001	283,881,818	28,388,181	535,320,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53,532,000	160,596,000
		35~39층	5	225,195,835	286,612,878	28,661,287	540,470,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54,047,000	162,141,000
		40~44층	5	227,341,668	289,343,939	28,934,393	545,620,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54,562,000	163,686,000
		45~49층	5	229,487,500	292,075,000	29,207,500	550,770,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55,077,000	165,231,000
91	102동 4,5호	3층	1	184,125,001	234,340,909	23,434,090	441,90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132,570,000	
		4층	2	190,620,834	242,608,333	24,260,833	457,490,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45,749,000	137,247,000	
		5층	2	197,120,834	250,881,060	25,088,106	473,090,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47,309,000	141,927,000	
		6층	2	203,620,835	259,153,787	25,915,378	488,690,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48,869,000	146,607,000
		7~10층	8	210,116,667	267,421,212	26,742,121	504,280,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50,428,000	151,284,000
		11~15층	10	214,450,001	272,936,363	27,293,636	514,680,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51,468,000	154,404,000
		16~20층	10	216,616,668	275,693,939	27,569,393	519,880,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51,988,000	155,964,000
		21~24층	8	218,783,334	278,451,515	27,845,151	525,080,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52,508,000	157,524,000
		26~29층	8	223,116,668	283,966,666	28,396,666	535,480,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53,548,000	160,644,000
		30~34층	10	225,283,334	286,724,242	28,672,424	540,680,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54,068,000	162,204,000
		35~39층	10	227,450,001	289,481,818	28,948,181	545,880,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54,588,000	163,764,000
		40~44층	10	229,612,501	292,234,090	29,223,409	551,070,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55,107,000	165,321,000
		45~49층	10	231,779,168	294,991,666	29,499,166	556,270,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55,627,000	166,881,000

094.3632A	1	103동 1호	49층	1	242,566,102	309,976,271	30,997,627	583,540,000	58,354,000	58,354,000	58,354,000	58,354,000	58,354,000	58,354,000	58,354,000	175,062,000
094.4600B	1	103동 3호	49층	1	243,707,480	312,702,291	31,270,229	587,680,000	58,768,000	58,768,000	58,768,000	58,768,000	58,768,000	58,768,000	58,768,000	176,304,000
101.5619	2	101동 3호	48층 (펜트복층)	1	272,464,102	351,023,544	35,102,354	658,590,000	65,859,000	65,859,000	65,859,000	65,859,000	65,859,000	65,859,000	65,859,000	197,577,000
		101동 4호	48층 (펜트복층)	1	275,190,439	354,535,965	35,453,596	665,180,000	66,518,000	66,518,000	66,518,000	66,518,000	66,518,000	66,518,000	66,518,000	199,554,000
106.9724	5	101동 1,2호	48층 (펜트복층)	2	286,831,529	368,034,974	36,803,497	691,670,000	69,167,000	69,167,000	69,167,000	69,167,000	69,167,000	69,167,000	69,167,000	207,501,000
		101동 5호	48층 (펜트복층)	1	289,701,212	371,717,080	37,171,708	698,590,000	69,859,000	69,859,000	69,859,000	69,859,000	69,859,000	69,859,000	69,859,000	209,577,000
		103동 4호	48층 (펜트복층)	1	283,961,846	364,352,868	36,435,286	684,750,000	68,475,000	68,475,000	68,475,000	68,475,000	68,475,000	68,475,000	68,475,000	205,425,000
		103동 5호	48층 (펜트복층)	1	281,096,308	360,676,084	36,067,608	677,840,000	67,784,000	67,784,000	67,784,000	67,784,000	67,784,000	67,784,000	67,784,000	203,352,000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 <sup>2</sup> )	076.3622	084.1820	090.3115	094.3632A	094.4600B	101.5619	106.9274
건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76	84	90	94A	94B	101	106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sup>2</sup>)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되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증감에 대해서 금액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거복합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총합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오차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가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로 청약접수를 받아 한국감정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타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m<sup>2</sup>, 세대)

구분		76	84	90	94A	94B	101	106	합계	
기관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3	3	-	-	-	-	-	6	
	장애인	경기도	3	3	-	-	-	-	-	6
		인천시	2	2	-	-	-	-	-	4
		서울시	2	2	-	-	-	-	-	4
	국가유공자	2	2	-	-	-	-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	-	-	-	-	4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	-	-	-	-	4	
	중소기업근로자	3	3	-	-	-	-	-	6	
북한이탈주민	2	2	-	-	-	-	-	4		
다자녀가구	경기도(6개월 이상) 거주자(50%)	3	14	15	-	-	1	1	34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50%)	2	14	15	-	-	-	-	31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맞벌이120% 이하) [우선공급(75%)]	평택시(1년이상) 거주자(30%)	10	9	-	-	-	-	19	
		경기도(6개월이상) 거주자(20%)	7	6	-	-	-	-	13	
		기타지역 거주자(50%)	17	15	-	-	-	-	3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0% (맞벌이130% 이하) [일반공급(25%)]	평택시(1년이상) 거주자(30%)	3	3	-	-	-	-	6	
		경기도(6개월이상) 거주자(20%)	2	2	-	-	-	-	4	
		기타지역 거주자(50%)	6	5	-	-	-	-	11	
노부모부양	평택시(1년이상) 거주자(30%)	1	2	2	-	-	-	-	5	
	경기도(6개월이상) 거주자(20%)	1	2	2	-	-	-	-	5	
	기타지역 거주자(50%)	1	4	4	-	-	-	-	9	
합계		74	97	38	0	0	1	1	21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②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 저가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b>자격요건 및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82 1185 2130 1369">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p>당첨 동·호수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ul>
<p>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 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 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li> </ol> </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8.12.11.)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내방 전 방문예약 필수)</li> <li>•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li> <li>• 방문접수(견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 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li> <li>•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p>특별공급</p>	<p>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p>	<p><b>2020.09.07.(월)</b> (청약Home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 이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li> </ul>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 제8호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이주대책 대상자(LH평택사업본부)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재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6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  
 예시) 평택(수도권내 대규모 택지지구인 경우)에서 공급하는 경우  
 - 평택시 및 경기도 : 50%, 전국 : 50%  
 → 위의 경우 평택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전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은 경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전 거주자 및 전국) 순으로 선정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b>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8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함)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및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li> <li>※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ul>
<b>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택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전국)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li> <li>② 청약부금은 공고일(8.19) 전일까지 면적변경, 지역별 예치금 충족 되어야 합니다.</li> </ul> </li> </ul>

	<p>③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li> <li>•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li> <li>-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평택시(1년 이상) / 경기도(6개월 이상) /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 전국 지역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b>가점제 75%, 추첨제 25%</b>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li>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b>가점제 30%, 추첨제 70%</b>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li>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li> <li>(1) 세대주가 아닌 자</li> <li>(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li>(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li>(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 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p>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4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b>2020.09.07.(월)</b> ,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고령자,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0.09.08.(화)</b> , 08:00~17:30		
	2순위	<b>2020.09.09.(수)</b> ,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건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해당 직계존비속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	

				인이 가능해야 함-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요건확인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추가(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 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b>2020.09.16(수)</b></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b>2020.10.06(화)~2020.10.09(금)</b> (10:00~16:00)</li> <li>• 장소</li> <li>-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16(수) ~ 2020.09.25(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ul> </li> <li>•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택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전국)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ul>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사업주체에서 통보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 분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b>2020.09.17.(목) ~ 2020.09.22.(화)</b> (10:00~16:00까지/6일간)</li> <li>※ 당첨자 및 특별공급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에 따른 건본주택 내방시에도 사전예약 신청 필수이며 사전예약 신청 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개별통지 예정 (정당계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개별통지일까지이며 당첨자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가능함)</li> </ul>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건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li> <li>○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li> <li>○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li> <li>○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li> <li>○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홈페이지 공지예정)</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기간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예비입주자의 경우 주택형 및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ul>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건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추가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참조(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 3.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10.06.(화) ~ 2020.10.09.(금) 4일간, 10:00 ~ 16:00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입금증</li> <li>•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 <li>•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아파트 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li> </ul>
제3자 계약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li> <li>-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li> </ul> </li> </ul>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점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점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점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점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점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점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점자 중 부적격 당점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점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점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점사실 유무 판단 시 당점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점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점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점이 되면 본 주택의 당점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점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점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점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종당점자 및 부적격 당점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점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점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점자 중 부적격 당점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점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점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점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점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점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점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0936-01-01-045098	(주)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입금 예시 : 101동 2301호 계약자 → 1012301홍길동 / 103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2020.07.13. 이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시 LTV:DTI 10% 우대 가능하니 해당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건보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기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 축소 및 대출불가 등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구입시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기존 주택 처분 및 입주 의무 강화 등 예외 허용 조건이 강화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실, 휘트니스 외),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8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마이너스 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76	6,890,000	1,000,000	1,000,000	4,890,000
84	8,170,000	1,000,000	1,000,000	6,170,000
90	7,200,000	1,000,000	1,000,000	5,200,000
94A	7,380,000	1,000,000	1,000,000	5,380,000
94B	7,570,000	1,000,000	1,000,000	5,570,000
101	9,330,000	1,000,000	1,000,000	7,330,000
106	11,300,000	1,000,000	1,000,000	9,3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56214577168862	현대건설(주)

### (3) 유의사항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샷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세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무풍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 미적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옵션 선택	타입	일반형/ 고급형	설치개소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제조사 (모델명)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예정일	
천정형 에어컨	택 1	76	일반형	4개소	전실(거실1+침실1+침실2+침실3)	삼성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고급형				7,580,000	758,000	758,000	6,064,000	
			일반형	2개소	부분(거실1+침실1)		3,740,000	374,000	374,000	2,992,000	
			고급형				4,340,000	434,000	434,000	3,472,000	
	택 1	84	일반형	5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기본확장형
			고급형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침실1 드레스룸(6-A)
			일반형	6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		9,020,000	902,000	902,000	7,216,000	H 드레스퀘어
			고급형				10,820,000	1,082,000	1,082,000	8,656,000	+약세사리함(6-B)
			일반형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서재)		9,020,000	902,000	902,000	7,216,000	침실1 서재+드레스룸
			고급형				10,820,000	1,082,000	1,082,000	8,656,000	슬라이딩도어(6-C)
			일반형	3개소	부분(거실1+주방1+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고급형				6,840,000	684,000	684,000	5,472,000	
	택 1	90	일반형	6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고급형				11,150,000	1,115,000	1,115,000	8,920,000	
			일반형	3개소	부분(거실1+주방1+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고급형				6,840,000	684,000	684,000	5,472,000	
	택 1	94A	일반형	6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60,000	946,000	946,000	7,568,000	기본확장형
			고급형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침실1 드레스룸(6-A)
			일반형	7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서재)		10,670,000	1,067,000	1,067,000	8,536,000	침실1 서재
			고급형				12,770,000	1,277,000	1,277,000	10,216,000	+드레스룸(6-B)
			일반형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드레스룸)		10,670,000	1,067,000	1,067,000	8,536,000	H 드레스퀘어
			고급형				12,770,000	1,277,000	1,277,000	10,216,000	+약세사리함(6-C)
			일반형	3개소	부분(거실1+주방1+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고급형				6,840,000	684,000	684,000	5,472,000	
	택 1	94B	일반형	6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60,000	946,000	946,000	7,568,000	
			고급형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일반형	3개소	부분(거실1+주방1+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고급형				6,840,000	684,000	684,000	5,472,000	
	택 1	101	일반형	7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		10,670,000	1,067,000	1,067,000	8,536,000	
			고급형				12,770,000	1,277,000	1,277,000	10,216,000	
			일반형	3개소	부분(거실1+주방1+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고급형				6,840,000	684,000	684,000	5,472,000	
	택 1	106	일반형	7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기본확장형
			고급형				13,100,000	1,310,000	1,310,000	10,480,000	침실1 드레스룸(5-A)
			일반형	8개소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서재)		12,320,000	1,232,000	1,232,000	9,856,000	침실1 서재
			고급형				14,720,000	1,472,000	1,472,000	11,776,000	+드레스룸(5-B)
			일반형		전실(거실1+주방1+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드레스룸)		12,320,000	1,232,000	1,232,000	9,856,000	H 드레스퀘어
			고급형				14,720,000	1,472,000	1,472,000	11,776,000	+약세사리함(5-C)
			일반형	3개소	거실1+주방1+침실1		5,990,000	599,000	599,000	4,792,000	
			고급형				6,890,000	689,000	689,000	5,512,000	

(2) 추가 선택 품목 가전 - 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주방	빌트인 김치냉장고 + 오픈수납장	택1	삼성전자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LG전자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삼성전자	1,690,000	169,000	169,000	1,352,000
			LG전자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 고급서랍장	택1	삼성전자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LG전자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빌트인 냉장고		SK매직	650,000	65,000	65,000	52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370,000	37,000	37,000	296,000
오븐		린나이	400,000	40,000	40,000	320,000	
하이브리드쿡탑							

(3) 공통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공통선택 품목	76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신발장+현관창고도어+시스템선반+복도장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84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6,370,000	637,000	637,000	5,096,000	
		신발장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90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10,090,000	1,009,000	1,009,000	8,072,000	
		신발장+현관창고도어+시스템선반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주방 냉장고장					
		주방팬트리(가구도어(유리)+시스템선반)					
	거실 뒷벽 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94A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6,370,000	637,000	637,000	5,096,000	
		신발장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 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 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94B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6,210,000	621,000	621,000	4,968,000		
	신발장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101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6,680,000	668,000	668,000	5,344,000		
	신발장+현관창고도어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106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6,830,000	683,000	683,000	5,464,000		
	신발장+현관창고도어						
	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4) 공통선택 품목 추가 선택옵션 - 평면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옵션선택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평면옵션	선택1	76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 가구+화장대	2,480,000	248,000	248,000	1,984,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선택4		침실1슬라이딩장	2,380,000	238,000	238,000	1,904,000	※선택3(H 드레스퀘어)선택시 설치불가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020,000	202,000	202,000	1,616,000	
	선택1	84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 가구+화장대	2,660,000	266,000	266,000	2,128,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3,030,000	303,000	303,000	2,424,000	
	선택4		서재+드레스룸	3,090,000	309,000	309,000	2,472,000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선택6		현관창고/가구+복도펜트리	1,640,000	164,000	164,000	1,312,000	
	선택7		H클린현관+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3,990,000	399,000	399,000	3,192,000	
	선택1	90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 가구+화장대	2,470,000	247,000	247,000	1,976,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선택4		침실1슬라이딩장	2,510,000	251,000	251,000	2,008,000	※선택3(H 드레스퀘어)선택시 설치불가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선택6		알파룸특화A	1,010,000	101,000	101,000	808,000	
	선택7		알파룸특화B	1,390,000	139,000	139,000	1,112,000	
	선택1	94A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 가구+화장대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2,610,000	261,000	261,000	2,088,000	
	선택4		서재+드레스룸	3,070,000	307,000	307,000	2,456,000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선택6	현관창고/가구+복도펜트리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선택7	H클린현관+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선택1	94B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가구+화장대	2,250,000	225,000	225,000	1,800,000		

	선택3	101	H 드레스퀘어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선택4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선택5		현관창고/가구+복도펜트리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선택6		H클린현관+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3,830,000	383,000	383,000	3,064,000	
			선택1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가구+화장대	2,510,000	251,000	251,000	2,008,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1,580,000	158,000	158,000	1,264,000		
	선택4	침실1슬라이딩장	2,440,000	244,000	244,000	1,952,000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360,000	236,000	236,000	1,888,000		
	선택6	2층복도장+침실4/침실5 불박이장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선택1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선택1-2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현관 에어샤워(천장) +빌트인 클리너(신발장내부)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주방+거실)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선택2	드레스룸가구+화장대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선택3	H 드레스퀘어	2,590,000	259,000	259,000	2,072,000		
	선택4	서재+드레스룸	3,080,000	308,000	308,000	2,464,000		
	선택5	침실2불박이장+침실3불박이장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선택6	2층복도장+침실4/침실5 불박이장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5) 추가선택옵션-마감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타입	적용범위		옵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마감옵션	선택1	전타입	벽	거실 세라믹타일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선택2-1	76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30,000	33,000	33,000	264,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340,000	134,000	134,000	1,072,000	
	선택2-1	84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50,000	35,000	35,000	280,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470,000	147,000	147,000	1,176,000	
	선택2-1	90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80,000	38,000	38,000	304,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선택2-1	94A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80,000	38,000	38,000	304,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선택2-1	94B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90,000	39,000	39,000	312,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540,000	169,000	169,000	1,352,000	
	선택2-1	101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390,000	39,000	39,000	312,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690,000	169,000	169,000	1,352,000	
	선택2-1	106		복도+거실+주방+침실 브러쉬마루	440,000	44,000	44,000	352,000	
	선택2-2			복도+거실+주방 폴리싱타일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6) 추가선택옵션-보이스 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적용범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보이스 홈	전 타입	거실+주방+안방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7) 추가선택옵션-지문인식 도어락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도어락	전 타입	지문인식도어락	165,000	16,500	16,500	132,000	

(8) 추가선택옵션-H-BELL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1.07.23.	입주지정일	
H-BELL	전 타입	H 벨	137,000	13,700	13,700	109,600	

(9) 추가선택옵션-무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타입	적용 범위	비고
무상옵션	선택1	76, 84, 90, 94A, 94B	공용욕실 (욕조/샤워부스) 선택형	
	선택2		주방 하부장 높이(86cm/90cm) 선택형	
	선택3		화장대 (입식/좌식) 선택형	
	선택1-1	101,106	공용욕실1 (욕조/샤워부스) 선택형	
	선택1-2		공용욕실2 (욕조/샤워부스) 선택형	
	선택2		주방 하부장 높이(86cm/90cm) 선택형	
	선택3		화장대 (입식/좌식) 선택형	

(10) 추가선택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balcony 확장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56214577168862	현대건설(주)

##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타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의 제조사, 사양,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옵션 선택시 방진망(미세먼지차단망)을 설치할 때 기본품목(일반방충망)에 비해 통기성, 시인성 및 채광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옵션 선택시 옵션 창에는 기본품목(일반방충망) 대신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및 추락방지 안전망이 설치가 되며 기본품목(일반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은 창호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부침실(안방)는 발코니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이 설치되며 안방창에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망과 추락방지 안전망이 일체형으로 설치됩니다.
- 홍보상의 성능은 시험소의 테스트 기준으로 실생활 사용자 달라질 수 있으며, 방진망 외의 부분(레일, 모헤어 부위 등)에서 일부 먼지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에는 제품특성상(롤방진망+안전망 일체형) 외부로 미세하게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4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종속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은 평형에 구분 없이 한 가지 안(거실/주방/안방)만 선택 가능 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안방 스위치 위에 음성인식 스피커가 별도로 설치 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거실 10인치 월패드가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로 변경 설치 되며, 거실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가 월패드 밑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일반형 주방 스마트 거치대가 음성인식 스마트 거치대로 변경되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콘센트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6	84	90	94A	94B	101	106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8,416,806	31,265,404	34,334,740	36,014,212	36,269,513	39,082,761	40,534,847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

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p><b>택지개발지구 및 단차외부 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계별(1,2,3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단지외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본 지구 내 및 인근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지구 내에 탄약고 2개소(알파, 매그넘)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국방부 시행)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 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은 현재의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인근 상업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육군 2개 부대가 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이전계획에 따라 지구 내로 이전(군용지)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내 국제교류단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1,2)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사업지구 북측에 오산공항이 위치하여,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항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천 정비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내 계획된 업무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계획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철도공사에서 설계진행 중인 수원발 KTX 노선(안)과 중첩됨에 따라 노선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 및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철도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정리역 서측 주차공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에 위치하여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물 관리권자(철도공사 및 평택시)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2단계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점 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점 이후에도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지구 내 위치한 송전선로는 향후 지중화 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반영된 변전소 및 케이블헤드부지 이외에 추가 케이블헤드 부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li> <li>•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을 위한 가공 송전선로 신설철탑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계획도로 하부에 송전선로 경과지(지하매설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현재 미정이며, 변전소, 케이블헤드 및 경과지등은 향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지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b>학교 및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개교시기 및 개교여부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학교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필지는「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구역 내 금지행위 행위제한 및 추가적인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구단위계획 등의 표기상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유·초·중) 및 경기도교육청(고·특수)이며, 지구 내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사)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고덕1초의 설립 시기는 미정 사항으로 본 단지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통학대책 비용 사업주체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임시학교 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컴퓨터 전산 추첨 배정되며, 중학교(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인근 학교부지를 비롯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계획 중인 학교(유치원)은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고, 학교(유치원) 설립계획은 투자심사 통과 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상황, 분양률, 입주상황, 학교 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설계 및 단지내부 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냉각탑을 비롯한 각종 설비 관련 장비와 시설 설치 위치는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항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주동의 외벽 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 및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석재마감 시공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은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주차장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된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각동 1층 주출입구는 주상복합 특성상 1층 근린생활시설 외부 통로에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각동 1층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보관함, 자전거 보관소 수량 및 로비 마감자재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동 1층 주출입구 외에 2층, 3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은 소방 관련 법령 및 인허가 협의결과를 근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간 진출입이 불가합니다.</li> <li>• 부대시설인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li> <li>•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평택시 주택 조례 제 7조 주차장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45대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관련 인허가 변경에 따라 시설물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9대, 완속충전시설 36대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관련 인허가 변경에 따라 시설물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 이상, 폭은 7.5m(기둥포함)이며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 및 통로 폭원은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고 주차공간의 천장고는 법적기준(2.1m) 준수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트렌치 시공 시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계획이 없으므로 주차장 일부 또는 트렌치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 <b>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0.207g입니다.</b></li> <li>•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단지내 조경은 특화설계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상 4층에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유닛 및 냉각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이삿짐 운반 등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서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의 거리는 각 동 별로 상이하여 동에 따라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음선)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하이오티(Hi-oT)보이스홈(유상음선)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하이오티(Hi-oT) 서비스 및 보이스홈(유상음선)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li> </ul>

	<p>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li> <li>•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li> <li>•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착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특기사항에서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li> <li>•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li> <li>•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li> <li>•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p><b>세대 및 마감재 관련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li> <li>•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시공 사유로 판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창호, 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 부 석재마감구간 양호코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부속물(디지털 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여야 합니다.</li> <li>•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li> <li>• 붙박이장류(반침장, 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도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 신발장(유상웁선)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li>•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이며 견본주택과 본공사시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li> <li>• 침실 반침장(유상웁선), 안방 붙박이장(유상웁선), 신발장(유상웁선),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li> <li>•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li> <li>•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li> </ul>
<p><b>기계전기 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로티 상부의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방지를 위한 제습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 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발코니에 실외기실 내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 실외기를 제외한 그 외 물품 적치는 피난에 방해되어 피난 및 소방관련 법령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통신사업법 69조의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24조의 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위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결과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각 동 지상15층 및 지상38층 엘리베이터 홀 EPS/TPS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및 관련 시설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변경된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건물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 공고지역으로 난방은 지역난방열원을 이용합니다.</li> </ul>
<b>커뮤니티 시설 관련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의 진출입은 103동 1층 및 지하2층의 전용승강기 및 계단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과 3층 근린생활시설은 소방 관련 법령 및 인허가 협의결과를 근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간 진출입이 불가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내·외부 마감재 및 실별 구획 레이아웃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li> </ul>
<b>건본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76.3622, 84.1820, 90.3115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입니다.</li> <li>•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 창호류 및 가전류 등은 품귀, 품질, 단종, 제조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공 및 하자 보수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관리형 토지신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유리치건설,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건설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li> <li>•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건설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 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li> <li>•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건설 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습니다.</li> <li>•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li> <li>•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ul>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p style="text-align: center;"><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b>[건축물 개요]</b></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50%;">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 아반그라운드</td> <td style="width:50%;">[인증 개요]</td> </tr> <tr> <td>건축주 : ㈜유리디자인</td> <td>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공용제약일 : 2024년 4월 30일</td> <td>유효기간 : 2020.7.9 ~ 사용유연일</td> </tr> <tr> <td>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td> <td></td> </tr> <tr> <td>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 / 665세대</td> <td><b>[인증 등급]</b></td> </tr> <tr> <td>면 적 : 169,137.9088 ㎡</td> <td>인증종류 : 융합등급(녹색건축인증+공용주택+일반(비주거))</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단면생활시설</td> <td>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설 계 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td> <td>최고등급부호 : 제2016-341호</td> </tr> <tr> <td></td> <td>발행부호 : 제2016-116호</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융합 등급)건축물로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b>[분야별 평가]</b></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보차이용 교통</td> <td>26%</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영향</td> <td>55%</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72%</td> </tr> <tr> <td>물순환관리</td> <td>89%</td> </tr> <tr> <td>유지관리</td> <td>100%</td> </tr> <tr> <td>생태환경</td> <td>11%</td> </tr> <tr> <td>실내환경</td> <td>56%</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7월 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kpc</b>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 아반그라운드	[인증 개요]	건축주 : ㈜유리디자인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공용제약일 : 2024년 4월 30일	유효기간 : 2020.7.9 ~ 사용유연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		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 / 665세대	<b>[인증 등급]</b>	면 적 : 169,137.9088 ㎡	인증종류 : 융합등급(녹색건축인증+공용주택+일반(비주거))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단면생활시설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 계 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	최고등급부호 : 제2016-341호		발행부호 : 제2016-116호	보차이용 교통	26%	에너지 및 환경영향	55%	재료 및 자원	72%	물순환관리	89%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11%	실내환경	56%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 아반그라운드 2. 신 청 자 : ㈜유리디자인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 4. 용 도 : 공동 주택</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50%;"><b>가. 소용 관련 등급</b></td> <td style="width:50%;"><b>다. 환경 관련 등급</b></td> </tr> <tr> <td>1.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td> <td>20. 건축물 에너지 효율 : ★★★★★</td> </tr> <tr> <td>2.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td> <td>21.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 ★★★★★</td> </tr> <tr> <td>3. 에너지 및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2. 에너지효율 : ★★★★★</td> </tr> <tr> <td>4.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td> <td>23. 에너지 효율 : ★★★★★</td> </tr> <tr> <td>5.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4. 에너지효율 : ★★★★★</td> </tr> <tr> <td>6.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5. 에너지효율 : ★★★★★</td> </tr> <tr> <td>7.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6. 에너지효율 : ★★★★★</td> </tr> <tr> <td>8.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7. 에너지효율 : ★★★★★</td> </tr> <tr> <td>9.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8.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0.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29.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1.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0.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2.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1.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3.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2.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4.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3.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5.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4.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6.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5.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7.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6.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8.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7. 에너지효율 : ★★★★★</td> </tr> <tr> <td>19. 환경영향 적합성 : ★★★★★</td> <td>38. 에너지효율 :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7월 09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b>가. 소용 관련 등급</b>	<b>다. 환경 관련 등급</b>	1.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0. 건축물 에너지 효율 : ★★★★★	2.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1.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 ★★★★★	3. 에너지 및 환경영향 적합성 : ★★★★★	22. 에너지효율 : ★★★★★	4.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3. 에너지 효율 : ★★★★★	5. 환경영향 적합성 : ★★★★★	24. 에너지효율 : ★★★★★	6. 환경영향 적합성 : ★★★★★	25. 에너지효율 : ★★★★★	7. 환경영향 적합성 : ★★★★★	26. 에너지효율 : ★★★★★	8. 환경영향 적합성 : ★★★★★	27. 에너지효율 : ★★★★★	9. 환경영향 적합성 : ★★★★★	28. 에너지효율 : ★★★★★	10. 환경영향 적합성 : ★★★★★	29. 에너지효율 : ★★★★★	11. 환경영향 적합성 : ★★★★★	30. 에너지효율 : ★★★★★	12. 환경영향 적합성 : ★★★★★	31. 에너지효율 : ★★★★★	13. 환경영향 적합성 : ★★★★★	32. 에너지효율 : ★★★★★	14. 환경영향 적합성 : ★★★★★	33. 에너지효율 : ★★★★★	15. 환경영향 적합성 : ★★★★★	34. 에너지효율 : ★★★★★	16. 환경영향 적합성 : ★★★★★	35. 에너지효율 : ★★★★★	17. 환경영향 적합성 : ★★★★★	36. 에너지효율 : ★★★★★	18. 환경영향 적합성 : ★★★★★	37. 에너지효율 : ★★★★★	19. 환경영향 적합성 : ★★★★★	38. 에너지효율 : ★★★★★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규정별 제 6호 서식(개정 2013.10.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50%;"><b>건축물 개요</b></td> <td style="width:50%;"><b>인증기준</b></td> </tr> <tr> <td>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td> <td>인증번호 : 201-주-에-1-0307</td> </tr> <tr> <td>공용제약일 : 2024.04.30</td> <td>평가자 : 박진희</td> </tr> <tr> <td>주 소 :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td> <td>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49층(주거))</td> <td>인증기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면적 : 169,137.9088(㎡)</td> <td>유연기간 : 사용유연 또는 사용기간 유연함</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td> <td></td> </tr> <tr> <td>설계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등급 : 1등급</td> </tr> </table>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b></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요구사항 (1) 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등급</td> <td>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비율</td> </tr> <tr>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1</td>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100%</td> </tr> </table> <p><b>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b></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구분</td> <td>인증기준</td> <td>인증기준</td> <td>인증기준</td> <td>인증기준</td> </tr> <tr> <td>난방</td>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d>1등급</td> <td>에너지효율등급(1등급)</td> </tr> <tr> <td>냉방</td> <td>65.1</td> <td>63.6</td> <td>63.6</td> <td>14.2</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41.3</td> <td>31.5</td> <td>7.0</td> </tr> <tr> <td>냉수</td> <td>10.6</td> <td>9.9</td> <td>27.2</td> <td>4.6</td> </tr> <tr> <td>합계</td> <td>107.9</td> <td>134.8</td> <td>122.1</td> <td>25.8</td> </tr> </table> <p>■ 단면적당 에너지효율 : 건축물에 난방, 냉방, 급탕, 냉수 부문에 요구되는 단면적당 에너지량 ■ 단면적당 에너지효율 : 건축물에 난방, 냉방, 급탕, 냉수 부문에 요구되는 단면적당 에너지량 ■ 단면적당 에너지효율 : 건축물에 난방, 냉방, 급탕, 냉수 부문에 요구되는 단면적당 에너지량 ■ 단면적당 에너지효율 : 건축물에 난방, 냉방, 급탕, 냉수 부문에 요구되는 단면적당 에너지량</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7월 09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b>건축물 개요</b>	<b>인증기준</b>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인증번호 : 201-주-에-1-0307	공용제약일 : 2024.04.30	평가자 : 박진희	주 소 :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49층(주거))	인증기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면적 : 169,137.9088(㎡)	유연기간 : 사용유연 또는 사용기간 유연함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요구사항 (1)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등급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비율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00%	구분	인증기준	인증기준	인증기준	인증기준	난방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냉방	65.1	63.6	63.6	14.2	급탕	30.7	41.3	31.5	7.0	냉수	10.6	9.9	27.2	4.6	합계	107.9	134.8	122.1	25.8	<p style="text-align: center;"><b>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right;">인증 번호 제 2020-101-062 호</p>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table style="width: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20%;"><b>신용</b></td> <td style="width:20%;">이름</td> <td style="width:60%;">주식회사 유리디자인</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화성시 레이크뷰로 47-7, (안성동, 시애틀타워)</td> </tr> <tr> <td><b>건축</b></td> <td>이름</td> <td>평택 고덕국제특구 제1호 Ebc-116 공동주택</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평택시 고덕원 1-1</td> </tr> <tr> <td><b>인증</b></td> <td>구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가옥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d></td> <td>인증종류</td>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td> </tr> <tr> <td></td> <td>인증기준</td>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8to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07월 09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전파관리소장</p>	<b>신용</b>	이름	주식회사 유리디자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레이크뷰로 47-7, (안성동, 시애틀타워)	<b>건축</b>	이름	평택 고덕국제특구 제1호 Ebc-116 공동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원 1-1	<b>인증</b>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가옥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인증종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인증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8to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 아반그라운드	[인증 개요]																																																																																																																																																							
건축주 : ㈜유리디자인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공용제약일 : 2024년 4월 30일	유효기간 : 2020.7.9 ~ 사용유연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																																																																																																																																																								
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 / 665세대	<b>[인증 등급]</b>																																																																																																																																																							
면 적 : 169,137.9088 ㎡	인증종류 : 융합등급(녹색건축인증+공용주택+일반(비주거))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단면생활시설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 계 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	최고등급부호 : 제2016-341호																																																																																																																																																							
	발행부호 : 제2016-116호																																																																																																																																																							
보차이용 교통	26%																																																																																																																																																							
에너지 및 환경영향	55%																																																																																																																																																							
재료 및 자원	72%																																																																																																																																																							
물순환관리	89%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11%																																																																																																																																																							
실내환경	56%																																																																																																																																																							
<b>가. 소용 관련 등급</b>	<b>다. 환경 관련 등급</b>																																																																																																																																																							
1.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0. 건축물 에너지 효율 : ★★★★★																																																																																																																																																							
2.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1.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 ★★★★★																																																																																																																																																							
3. 에너지 및 환경영향 적합성 : ★★★★★	22. 에너지효율 : ★★★★★																																																																																																																																																							
4. 공동주택 용도 적합성 : ★★★★★	23. 에너지 효율 : ★★★★★																																																																																																																																																							
5. 환경영향 적합성 : ★★★★★	24. 에너지효율 : ★★★★★																																																																																																																																																							
6. 환경영향 적합성 : ★★★★★	25. 에너지효율 : ★★★★★																																																																																																																																																							
7. 환경영향 적합성 : ★★★★★	26. 에너지효율 : ★★★★★																																																																																																																																																							
8. 환경영향 적합성 : ★★★★★	27. 에너지효율 : ★★★★★																																																																																																																																																							
9. 환경영향 적합성 : ★★★★★	28. 에너지효율 : ★★★★★																																																																																																																																																							
10. 환경영향 적합성 : ★★★★★	29. 에너지효율 : ★★★★★																																																																																																																																																							
11. 환경영향 적합성 : ★★★★★	30. 에너지효율 : ★★★★★																																																																																																																																																							
12. 환경영향 적합성 : ★★★★★	31. 에너지효율 : ★★★★★																																																																																																																																																							
13. 환경영향 적합성 : ★★★★★	32. 에너지효율 : ★★★★★																																																																																																																																																							
14. 환경영향 적합성 : ★★★★★	33. 에너지효율 : ★★★★★																																																																																																																																																							
15. 환경영향 적합성 : ★★★★★	34. 에너지효율 : ★★★★★																																																																																																																																																							
16. 환경영향 적합성 : ★★★★★	35. 에너지효율 : ★★★★★																																																																																																																																																							
17. 환경영향 적합성 : ★★★★★	36. 에너지효율 : ★★★★★																																																																																																																																																							
18. 환경영향 적합성 : ★★★★★	37. 에너지효율 : ★★★★★																																																																																																																																																							
19. 환경영향 적합성 : ★★★★★	38. 에너지효율 : ★★★★★																																																																																																																																																							
<b>건축물 개요</b>	<b>인증기준</b>																																																																																																																																																							
건축물명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사이드	인증번호 : 201-주-에-1-0307																																																																																																																																																							
공용제약일 : 2024.04.30	평가자 : 박진희																																																																																																																																																							
주 소 : 용인시 고덕국제특구 제1호지구 Ebc-116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49층(49층(주거))	인증기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면적 : 169,137.9088(㎡)	유연기간 : 사용유연 또는 사용기간 유연함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이엔지인프라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요구사항 (1)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등급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비율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00%																																																																																																																																																				
구분	인증기준	인증기준	인증기준	인증기준																																																																																																																																																				
난방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냉방	65.1	63.6	63.6	14.2																																																																																																																																																				
급탕	30.7	41.3	31.5	7.0																																																																																																																																																				
냉수	10.6	9.9	27.2	4.6																																																																																																																																																				
합계	107.9	134.8	122.1	25.8																																																																																																																																																				
<b>신용</b>	이름	주식회사 유리디자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레이크뷰로 47-7, (안성동, 시애틀타워)																																																																																																																																																						
<b>건축</b>	이름	평택 고덕국제특구 제1호 Ebc-116 공동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원 1-1																																																																																																																																																						
<b>인증</b>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가옥사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인증종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인증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A(8toT)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케이엔니지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선진이엔지	(주)서광이에프
감리금액	금3,466,124,000원	금973,118,925원	금471,000,000원 / 금149,000,000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9,685,362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35,023,913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259,545				
	기간이자	2,227,541			용접공사	-		공조설비	2,519,090				
	그 밖의 비용	16,546,438			조적공사	1,691,157		난방설비공사	2,519,091				
	필요적 경비	3,820,404			미장공사	6,530,669		가스설비공사	755,728				
	계	92,279,745			단열공사	298,440		자동제어 설비공사	503,818				
공사비	토목	토공사			4,940,149	방수 방습공사		2,219,875	공사비	그 밖의 공종	특수설비공사	7,557,273	
		흙막이공사			266,172	목공사		2,210,664			그 밖의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8,876,236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291,451				정보통신공사	3,280,348
		옹벽공사			-	금속공사		382,260				소방설비공사	8,806,229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382,260				승강기공사	4,631,080
		우수·오수공사			1,992,740	창호공사	5,204,271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829,183	
		공동구 공사			-	유리공사	1,004,010		이윤	1,243,77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3,951,561	계	156,415,803				
		도로포장공사			2,897,724	돌공사	2,625,163	간접비	설계비	4,138,2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354,896	도장공사	1,142,176		감리비	5,063,785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326,398	일반분양시설 경비	1,085,067						
	조경공사	5,415,709		수장공사	1,989,597	분담금 및 부담금	3,938,500						
	부대시설공사	1,877,398		주방용가구공사	10,013,385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3,638,384	그 밖의 건축공사	5,139,793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가시설물공사		-	급수설비공사	1,259,546	계		14,225,552				
		지정 및 기초공사		3,045,558	급탕설비공사	1,259,546	그 밖의 비용		66,579,362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1,259,545	합계		329,500,463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0-101-0007200 호	230,651,26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주)유리치건설	현대건설(주)	도우아이앤디(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반송동, 서해더블루 213~214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 1813호(역삼동)
등록번호	110111-1714818	134811-0214437	110111-0007909	134511-0370079

☐ **건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www.hillstate.co.kr/s/#goduk-skycity>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

☐ **분양문의** : 1588-047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